

민원 인쇄 ✕

인쇄자: 김명호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03-1204651
신청일	2026-03-29 15:43:18
신청인	김명호
신청인 구분	개인
주소	[033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15-45 1019-201(진관동, 은평뉴타운구파발)(진관동, 은평뉴타운구파발)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유선전화	070-8770-5659
휴대전화	
전자우편	mkim1795@daum.net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국세청, 세무서 직원들 교육 좀 시켜라
내용	<p>1. 은평 뉴타운 10단지-1에 대한 탈세 제보했더니, 은평 세무서 담당(접수번호 : 202603-147J-014) 임수기가 첨부한 "동일한 공사 쪼개기 수주 계약은 총액으로 법 위반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첨부, case.pdf) 읽었다며 그건 "건설산업기본법"에만 해당되고 "부가가치세"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 앞뒤 짝 막힌 돌대가지지.</p> <p>2. 위법한 공사 수주할 목적의 쪼개기/분할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수의계약 대상 제6호의 단서 조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쪼개기 계약 금지 규정하였고 대법원도 모처럼 위와 같은 "희귀한 합법적인 판결" 내놓았는데, 임수기 돌대가지는 아니라고 하는 거야 "동일한 공사 분할 수주했다면 부가가치세는 총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야만 들어 처먹는 거냐? 세무서 공무원들은 임수기 같은 돌대가지들 밖에 없냐? 아니라면, 전국 세무서 공무원들 교육들 시켜라</p> <p>3. 그리고 기존의 동일한 사업을 위법하게 쪼개기/분할로 재계약한 대청그린웍스가 실적상황이라며 2026.2.20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자료들 첨부했다(첨부, green.pdf).</p> <p>자료 보면, 200여 단체와 거래했는데, 재계약 건수가 많다. 대청그린웍스가 은평뉴타운 10단지에만 쪼개기 재계약 제안했겠냐? 세무조사해봐라</p>
첨부 파일	case.pdf green.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세청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은평세무서 조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3-1184836

접수일	2026-03-29 18:47:58
담당자(연락처)	임수기 (02-2132-9658)
처리예정일	2026-04-1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